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3. 31 선고 2020가합1015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6. F 주식회사

7. G 주식회사

8. 주식회사 H

9. 주식회사 I

10. 주식회사 J

11. 주식회사 K

12. 주식회사 L

13. 주식회사 M

14. N 주식회사

15. 주식회사 O

16. P 주식회사

17. 주식회사 Q

18. 주식회사 R

19. 주식회사 S

20. 주식회사 T

21. U 주식회사

22. V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임경윤

피고의료법인 W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재

변론 종결2021. 3. 17.

판결 선고2021. 3. 31.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X 사이에 2017. 4.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X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7. 4. 18. 접수 제205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5. 체결된 증여계약을
587,980,504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2 목록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원고들의 추심금채권

1) 원고들은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31081호로 아래의 표각 '채권액(원)'란 기재 각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2. 27. 위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주식회사 A	30,756,000	12	주식회사 L	22,442,200
2	B	109,822,680	13	주식회사 M	68,816,000
3	C	3,297,700	14	N 주식회사	79,500,000
4	D	20,999,900	15	주식회사 O	1,994,350,000
5	E	34,650,000	16	P 주식회사1) 변경전 상호는 'Z 주식회사'였다.	77,800,000
6	F 주식회사	55,550,000	17	주식회사 Q	411,698,540
7	G 주식회사	75,900,000	18	주식회사 R	89,059,000
8	주식회사 H	20,000,000	19	주식회사 S	580,144,540
9	주식회사 I	431,390,500	20	주식회사 T	10,580,000
10	주식회사 J	216,821,340	21	U 주식회사	888,340,000
11	주식회사 K	123,590,000	22	V 주식회사	1,236,180,000
합계	6,581,688,400				

2) 원고들은 집행력 있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Y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타채100769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15. 2016카단101341호로 가압류된 채무자 Y의 제3채무자인 X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들별로 아래 표 각 '압류할 채권액(원)'란 기재 각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압류된 채권은 원고들이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3. 23. X에게 송달되었다.

1	주식회사 A	10,641,423	12	주식회사 L	7,764,889
2	B	37,998,100	13	주식회사 M	23,809,993
3	C	1,140,988	14	N 주식회사	27,506,603
4	D	7,265,549	15	주식회사 O	690,035,153
5	E	11,988,727	16	P 주식회사	26,918,412
6	F 주식회사	19,220,023	17	주식회사 Q	145,166,353
7	G 주식회사	26,261,021	18	주식회사 R	30,813,970
8	주식회사 H	6,919,900	19	주식회사 S	200,727,191
9	주식회사 I	149,258,961	20	주식회사 T	3,653,707
10	주식회사 J	75,019,102	21	U 주식회사	307,363,285
11	주식회사 K	42,761,524	22	V 주식회사	427,712,115
합계	2,279,946,989				

3) 한편, X는 2016. 12. 27. Y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52145호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에 보조참가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12. X의 Y에 대한 2015. 6. 11.자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무가 860,785,645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들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9나50178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4. X의 Y에 대한 2015. 6. 11.자 및 2015. 8. 6.자 공사도급(변경)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무는 587,980,50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X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0. 1. 9.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9다271067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2020. 4. 23. X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합101459호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2. 18. 'X는 원고들에게 447,980,50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1.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X와 피고의 증여계약

X는 2017. 4. 5. 피고에게 X의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7. 4. 18. 접수 제20560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X의 무자력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X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들이 2017. 3. 15. Y의 X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원고들이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3. 23. X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X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Y의 X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부여받은 것인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등 참조), 피압류채권인 Y의 X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7. 4. 5.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들의 추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X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X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5.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이고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는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X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 자체가 재산상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위 증여계약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다는 사정은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인 X와 수익자인 피고 사이의 '재산상'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하여 원고들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결과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이 처분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두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의료법 제48조 제3항 소정의 '의료법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

2) 피고는 X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제1심 판결 이전이었으므로 Y에 대하여 587,980,504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고, 의료법인 설립절차와 일정에 따라 증여한 것 뿐이어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X는 2016. 12.경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고 2017. 3. 23.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며 그 당시 압류된 Y의 X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이 2,279,946,989원에 이른 점, X는 피고의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2017. 4. 3.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점, X는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X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원고들을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세현

판사이은혜

판사김라미

별지

- 1) 변경전 상호는 'Z 주식회사'였다.
- 2)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하더라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저당권자나 지상권자 등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하여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채권자 스스로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상회복 방법을 택한 이상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마찬가지로,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승소한 후 의료법 소정의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지 못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들이 스스로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원상회복 방법을 택한 이상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이유는 없다.